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6. 14 선고 2022나11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6. 14 선고 2022나1153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합123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박성현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숙

변론종결 2023. 4. 19.

판결선고 2023. 6. 14.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합123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제주시 D 과수원 4,937㎡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0쪽 21행부터 11쪽 12행까지 중 “(피고 C은 …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B이 제주시 O 대 237.5㎡ 및 그 지상 건물 중 9분의 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이 B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제주시 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B의 부망 E 소유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20. 5. 1. 2019. 5.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B의 모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제주시 O 대 237.5㎡ 및 그 지상 건물 중 9분의 2 지분이 B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등기부상 등기원인(2020. 5. 8.자 매매)과 달리 2018. 7.경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기초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 성립 이전에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늦어도 2018. 1. 8.경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해행위 이후에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B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신, 판사 류지원, 판사 강동훈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201,890,39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01,890,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예비적 청구는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존 청구와 소송물(사해행위취소권 및원상회복청구권)이 동일하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2010다8050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예비적 청구취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